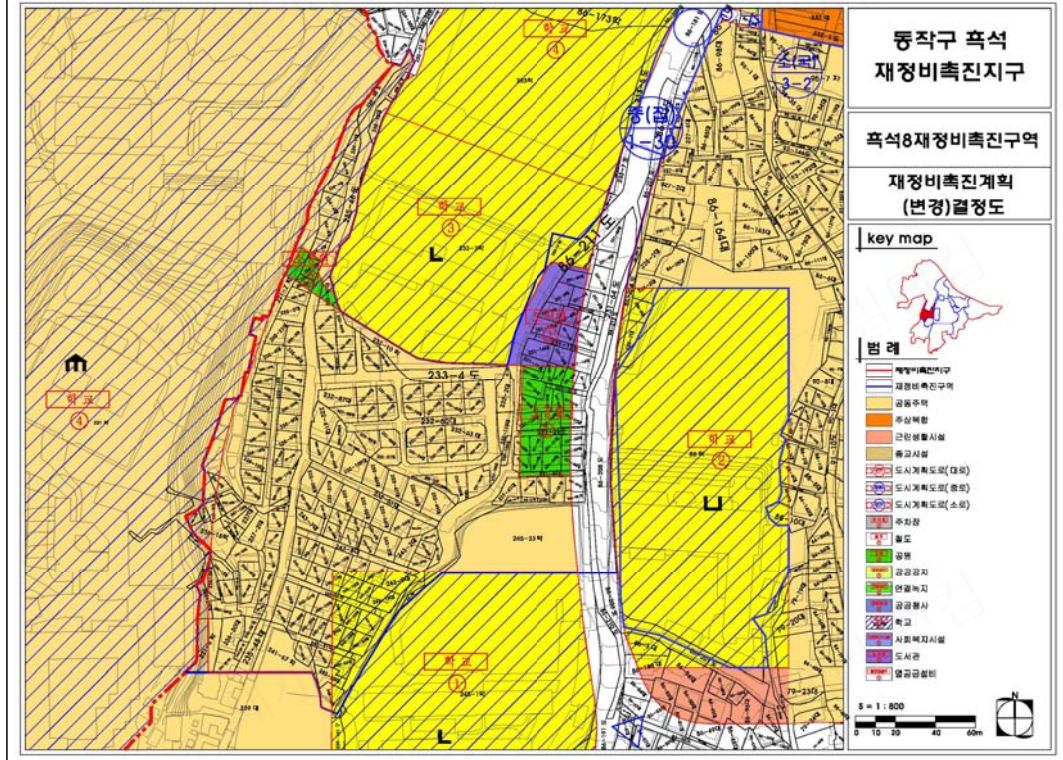


흑석8구역 촉진계획 결정도(변경)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13호

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3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28일
서울특별시

1.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: 11,563.6㎡

구역명		위치	사업방식	면적(㎡)	구역지정일(고시번호)
기정	홍은1재정비촉진구역	서대문구 홍은동 48-149번지 일대	도시환경정비사업	11,563.6	2008.12.18. (서울시고시 제2008-461호)
변경	해 제				

□ 재정비촉진계획

○ 용도지역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증감	변경		
계	11,563.6	-	11,563.6	100.0	구역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상태로 환원
준주거지역	9,622.4	감 9,622.4	-	-	
3종일반주거지역	1,941.2	증 9,587.4	11,528.6	99.7	
2종일반주거지역	-	증 35.0	35.0	0.3	

○ 토지이용계획(폐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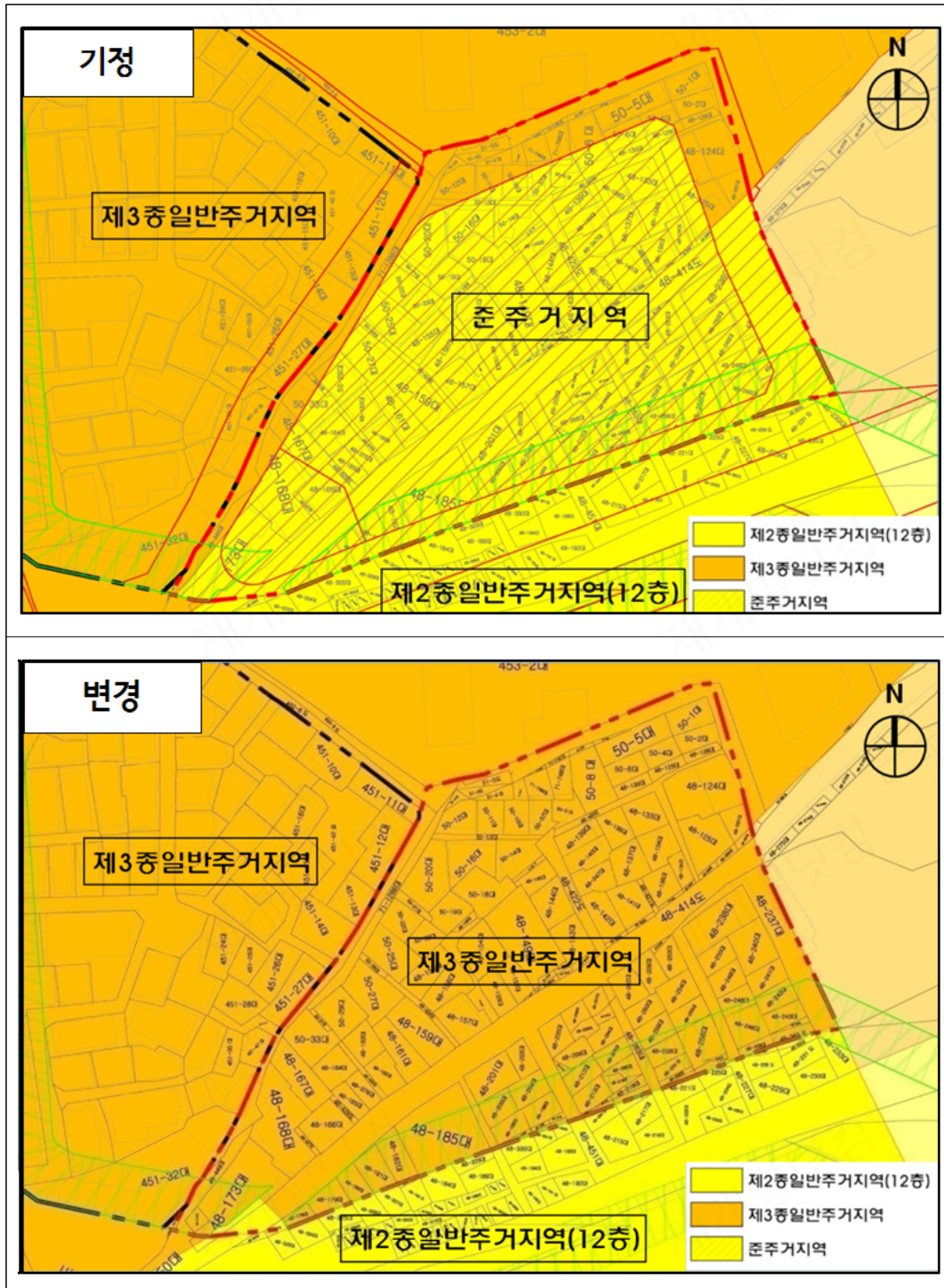
구분	명칭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합계		11,563.6	100.0	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폐지
정비기반시설 등	소계	4,184.6	36.2	
	도로	3,439.6	29.8	
	공원	745.0	6.4	
택지(획지)	획지	7,379.0	63.8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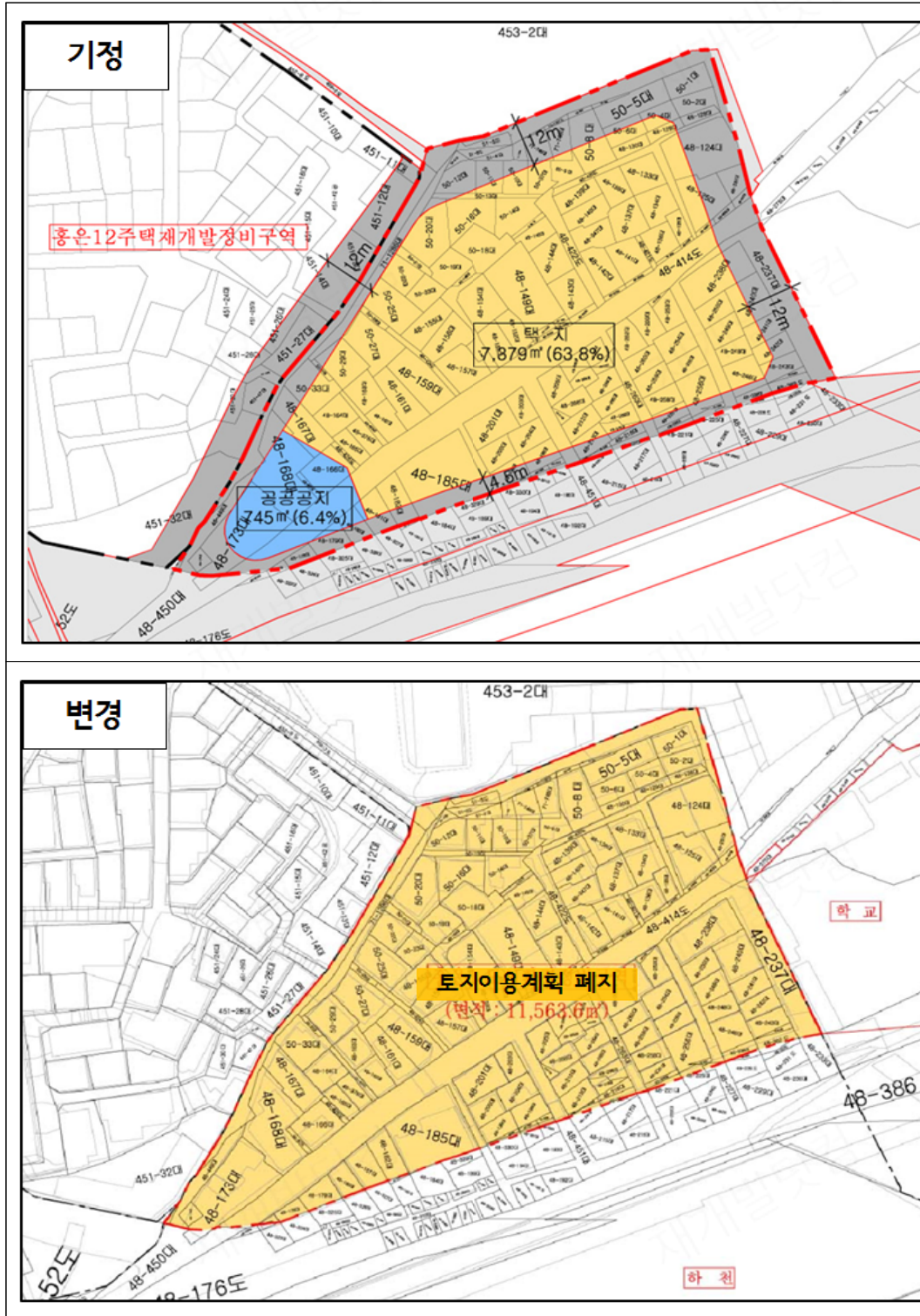
결정 구분	가구 또는 획지	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/높이
	명칭	면적(㎡)				
기정	택지	7,379	판매, 업무, 주거(공동주택)	47%이하	370%이하	80m 이하 26층 이하
변경	구역해제에 따른 폐지					

※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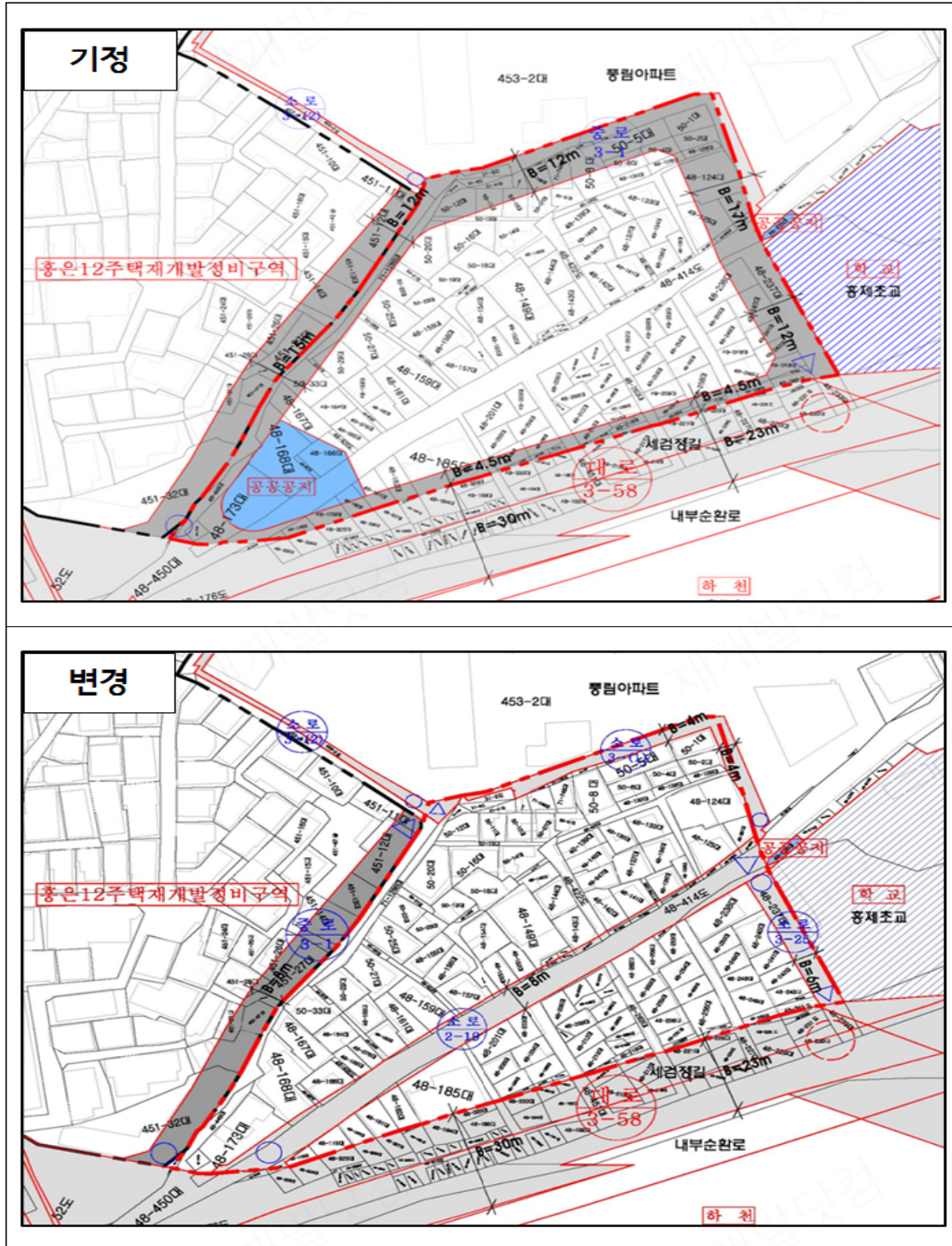
2. 지형도면
○ 용도지역



○ 토지이용계획



○ 도시계획시설



3. 시민의 열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 장소에서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(☎ 02-2133-7220)
 - 또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과(☎ 02-330-8154)